

법원 “채널A 기자 참여 없이 휴대폰 압수...위법·취소”

5월 “검찰 압수수색...위법” 준항고

“피압수자 절차참여 침해...위법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지난 5월27일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이날 24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해 휴대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사유 가운데 ‘소유자 및 사용자 측에 영장 미제시’, ‘의뢰자·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 미보장’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준항고’란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 중 형사소송법 제 219·118조 등에 따른 적법한 집행 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선 피의자가 집행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제시 없이 물건을 압수해 간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검찰이 영장 집행 개

시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압수하기 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물 포렌식 관련) 처분을 개시했음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관련 법리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선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가려야 한다”며 “위법의 중대성은 위법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 과정 중 일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전 기자 측의 ‘영장의 장소적 범위 이탈’, ‘유효기간 경

과 후 처분’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호텔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한 부분과 검찰에서 이를 포렌식한 부분 2가지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압상 장소, 유효기간 등 4~5가지의 위법 사유를 들었지만, 그 중 우리 측에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2가지 사유로 사실상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할 경우) 즉시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결정도 동시에 구했으나, 이는 절차상 이유로 법원이 곧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며 “반환 처분에 대해 수사팀이 만약 거부한다면 다시 인도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취소되

면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별도 결정은 필요없다는 취지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튿날 이 전 기자의 휴대폰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환부 신청 및 관련 포렌식 자료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그 참여 아래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에서는) 압수물 소유자 내지 사용자가 영장을 보고 압수에 참여할 권리 등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무상으로 맞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법원의) 압수 취소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한 후 재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당장 반환 여부나

절차도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월14일 서울의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폰 2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5월 말에 검찰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잠정 중단됐고 휴대폰 압수 시 재개 통지를 하고 집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휴대폰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선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서선욱 기자



서울지역 자주통일 선봉대 ‘한반도기 들고’ 서울지역 자주통일 선봉대가 2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돈 받으려 판결문 위조’ 채권 추심회사 직원 집행유예

위조 판결문 이용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아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5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주

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권추심 회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9월2일 점심 무렵 자신이 일하는 광주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 서울중앙지법 B판사 명의의 판결문 1부를 위

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20분께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위조한 판결문을 공무원에게 제시한 뒤 채무자 C씨의 주민등록 초본 1부를 건네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유나 기자

48년 전 계엄법 위반 유죄 10명 재심서 모두 ‘무죄’

1972년 유언비어 유포·불법 집회 혐의



1972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이 48년 만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유언비어 날조·유포 또는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명 중 8명은 재심 판결 이전 사망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함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77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72년(당시 44세) 11월13일 오후 1시께 전남 한 지역 B씨의 집에서 구걸하며 ‘현재 국회가 해산되는 날 앞으로 국회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 성격의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는 지난해 3월28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

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령 조항이 포함된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전체가 옛 헌법 제75조 제1항,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지 이전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유언비어 날조·유포 또는 불법 집회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9명의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봉우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